

# 공 시 송 달 공 고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(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)를 위반하여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·사용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(원상회복 등)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(처분의 사전통지)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, 행위자(소유자) 미상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. 6. 15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

1. 공고사항: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위반하여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 송달 불능(행위자 미상)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3. 6. 15. ~ 2023. 6. 30.(15일간)
3.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:
  - 가. 위 치: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871-4(구거)
  - 나. 대상자: 미 상
  - 다. 위반사항: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(컨테이너 적치)
4. 공고내용
  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2023. 6. 30.(금) 까지 서구청 생태하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게시장소: 전국 시·군·구 홈페이지 및 게시관

6. 기타사항

-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.

-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, 예정대로 후속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7. 문의사항: 인천광역시 서구청 생태하천과 하천팀(☎032-560-0912)

# 공시송달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위 치 도(오류동 871-4)



현장사진(공유수면 무단 점유-컨테이너)